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헌승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75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3.

발 의 자 : 이헌승 · 김선교 · 이종배
유용원 · 김 건 · 성일종
이성권 · 김소희 · 박덕흠
김상훈 · 김재섭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.79%와 고
등교육특별회계와 영유아교육특별회계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교
육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기 호황 등으로 세입이 증
가하면 교부금도 같이 증가하게 되어 실제 교육재정 수요보다 교부금
을 더 많이 받게 되고, 교육청은 예산 집행을 위해 남는 예산을 단기
적 현금성 사업이나 불필요한 시설 투자에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
있으므로 재원 배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내국세 총액 20.79%로 고정되어 있는 교부금 재원의 비율을
학령인구,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
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2항제1
호).

법률 제 호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중 “총액의 1만분의 2,079”를 “총액에 학령인구,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